

# 내과전공의 연차별 교과과정

## 내과전공의 온라인 외부학술회의 인정에 관한 시행규칙

###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전공의 연차별 교과과정에 따른 내과전공의 외부학술회의 참석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내과전공의 온라인 외부학술회의(이하 "학술대회" 라고 한다.)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대상)

온라인 학술대회 참석 대상은 내과전공의로 한다.

### 제 3 조 (실시기관)

온라인 학술대회 실시기관은 대한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학회로 한다.

### 제 4 조 (온라인 외부학술회의 계획 및 승인)

1. 학술대회 실시기관은 온라인 학술대회 실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대한내과학회에 학술대회 실시계획과 인정 점수를 신청하고, 대한내과학회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학술대회 인정 점수 승인을 불가 한다.
2. 승인된 학술대회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20일 전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승인된 온라인 학술대회 계획은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제 5 조 (온라인 외부학술회의 프로그램 및 점수 관리)

1. 온라인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점수는 3시간 참석 시 1점, 6시간 참석 시 2점으로 인정한다.  
단, 국내개최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참석 점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온라인 학술대회는 실시간 화상 강의와 녹화 강연 영상 송출 방식으로 참석 확인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1) 실시간 화상 강의 방식  
출결관리시스템이 준비되어 "각 강의" 또는 "각 세션"마다 출결관리 기록이 필요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 시 해당 점수가 인정된다.
  - 2) 녹화 강연 영상 송출 방식  
출결관리시스템이 준비되어 "각 강의"마다 출결관리 기록이 필요하고, 각 강의를 해당 교육일 내에 이수(시작, 종료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해 해당 점수가 인정된다.
  - 3) 동일 시간에 복수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이수한 경우에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6 조 (온라인 외부학술회의 결과보고)

1. 학술대회 실시기관은 온라인 학술대회 이수한 참석자를 대한내과학회 전공의 외부학술회의 참석 보고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학술대회 실시 후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점수 이수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조 (제재)

1. 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부학술회의 인정 기관 지정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1) 학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교육에 대하여 학술대회 점수를 부여한 경우

- 2) 온라인 학술대회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
- 3) 온라인 학술대회 종료 후 결과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4) 자체 의료진 중심의 형식적 교육을 한 경우
- 5)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결과 교육목적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 6)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 8 조 (운영세칙)**

1. 온라인 연수교육은 한시적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만 인정하되, 예측 불가한 심각 상황(예: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학회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교육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내과학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9 조 (부칙)**

1. 본 규칙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